

## 문서 송부촉탁 신청서

사건: 2006로15 기피기각결정에대한항고

항고인: 김명호,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15

위 사건(이하 '이사건')관련, 재항고인은, 12월 19일자 재항고 이유서에서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272조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1. 기록의 보관처: 서울고법 형사 5부
2. 송부 촉탁할 기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서울고법 사건번호 2005노2371)에서, 전임 재판장 이상훈의 석명권 행사로 인하여 검찰이 제출한 석명사항 답변서
3.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9월 21일자 공판조서에 따르면(입증자료 1), 조귀장 판사는 "(검사에게) 개별 증거방법에 대한 입증취지를 밝힐 것을 명." 하였고, 그에 대하여 검사는 "(증거서류 등 목록을 제출하면서) 목록에 어떤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지와 그 입증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한다고 답변" 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가. 2005노2371사건에서의 검사측이 제출한 석명사항 답변서와 비교함으로 써, 이사건 공판조서 기재에서의 '검사측 증거제출'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한 것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나. 증거목록표를 제외하고, 검사측으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등으로 부터, 조귀장 판사의 소송지휘에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2006년 12월 22일

위 항고인 김명호

대법원 귀중